

2024 조충환·양건 SPA형사소송법 1쇄 정오표

[1권]

p.37

(3) ① 수사권, 수사지휘권의 검사에 집중(제195조) ⇨ 삭제

p.48

(1) 수사의 개념 8줄 이하

! 개정법에 의하면, 제1차적인 수사개시권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삭제

p.68

②㉠아래

1.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 1.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p.97

(1) 수사단서의 의미

5줄아래 여백에 추가

▶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활동을 한 때 피의자로 보는 실질설에 의하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시, 현행범 체포시(사인에 의한 현행범체포⇨인도시)에 피의자가 된다.

p.152

⑤ 긴급통신제한조치

㉠ ~ 청구하여야 하며, 집행한 때로부터 ~중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 ㉠~ 청구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제9항), 집행한 때부터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제8조 제5항, 제10항)

㉠ 내용 아래 여백에 추가(6줄 아래 ! 추가)

! 종전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송부제도가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예외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156~157

하단 ▶(수사기관 등이 ~ p.157. 5. ~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 삭제 (p.158과 중복)

p.163

㉠ (수사준칙 제5항) ⇨ (수사준칙 제19조 제5항)

p.273

㉠ ! 작성된 심문조서는 법관면전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 ! 작성된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p.327

㉡ ~~(제312조 제1항) ⇨ ~~(제312조 제6항)

p.359

2번 해설 ㉡ 제245조의 7 제1항 ⇨ ㉡ 개정법에 의하면 고발인은 제외(제245조의 7 제1항)
정답 ㉢ ⇨ ㉡㉢

p.362

(1) ㉢ 추가
㉢ 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p.362

(2) ㉡ 아래 내용으로 교체
㉡ 재항고는 항고기간결정 통지 또는 항고에 의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p.391

㉡ ㉠ ~제247조 제1항에서 ~ ⇨ ㉠ ~제247조에서

p.402

10. ⇨ 특정을 부정한 경우 2. 아래로 이동

[2권]

p.55

셋째줄 ~업무를 따지기 보다는 ~ ⇨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

p.121

관련판례 1. ~진술의 일부와 다름없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대판 2009.12.24, 2009도11575). ⇨ 1. ~진술의 일부와 다름없다(대판 2009.12.24, 2009도11575).

p.121

관련판례 2를 전체삭제 하고, 판례 3을 판례2로 수정

p.224

㉞ ㉞ 제312조 제1항 적용범위 ⇨ 아래 내용으로 교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필요적 공범 또는 대항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2023.6.1,2023도3741)

p.289

6번 ② ~회시은 ~ ⇨ ~회신은 ~

p.291

(1) ① ~ 주장사실의 전부만~ ⇨ ~ 주장사실의 진부만~

p.332

관련판례 1. ~제32조 제2항 ~ ⇨ ~제323조 제2항 ~

p. 341

관련판례 2.(▶▶포함) 전체를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교체

2.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라고 판시하므로써,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만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된다고 한 종래의 판결을 변경했다(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행위시법으로 처벌 -

p.351

(1) 의의

~일사부재의 효력을 말한다(통설) ⇨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말한다(통설)

p.449

관련판례2.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 ⇨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하여는 ~

p.452

㉔ ~ 참여 등에 관 제243조의 2가~ ⇨ ~ 참여 등에 관한 제243조의 2가~

p.455

3번 ④ ~재판자 ⇨ ~재판장

p.495

(3) 유사점·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 (단, 즉결심판의 경우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을 인정하는 기존판례 속지를 요함)